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6. 10 선고 2018가합32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재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오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6.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9. 7.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4. 200,000,000원을, 2014. 6. 30. 150,000,000원을, 2017. 2. 14. 2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4. 14. 위 2017. 2. 14.자 대여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의 합계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이승엽, 판사 김준영

1) 2019.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는 '2019.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오기로 보여 이를 주문과 같이 설회하여 판단한다.